

|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제공일자 | 2013. 1. 29(화)    | 담당자 |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홍보담당 | 김세환 부장(3775-9051) | 연락처 | 02-3775-9013<br>010-2394-6630 | 총2매 |

## 제목 : 『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』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김대식)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, 김대환 연구위원,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정책보고서 『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』을 발간하였음.

###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분리해야

- 현재 퇴직연금 도입기업 대부분은 1~2개 금융기관만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- 퇴직연금을 도입한 80%이상이 단 1개의 금융기관만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남.

<표1> 퇴직연금기업의 사업자 선정수 (2010년 기준)

| 운용·자산관리기관 수 |      |       | 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
| 구분          | 평균   | 1개    | 2개    | 3개   | 4개이상 |
| 운용관리기관수     | 1.3개 | 80.7% | 12.3% | 4.3% | 2.7% |
| 자산관리기관수     | 1.3개 | 80.6% | 12.0% | 4.7% | 2.7% |

주: 퇴직연금 도입 기업 300개 대상 설문조사

- 이처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사업자가 취급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- 은퇴설계서비스, 자산운용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관리서비스가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로 전락하고 있음.
- 따라서 근로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의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의 취급요건(기준)을 명문화하여 동일한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

- 또한 연금계리사, 공인회계사 등 제3의 감시자로 하여금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인과 연금회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시 필요

## 자행예금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 금지 필요

- 2005년 신탁업 감독규정개정으로 은행의 자행예금(자기은행예금)으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함.
- 신탁계약에서는 자산관리기관인 은행자신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.
- 그럼에도 2005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산관리기관인 은행도 자사상품을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됨.
- \* 2013년 4월부터 자행예금 편입비율(운용하는 비율)을 50%로 축소 예정

<표2> 은행 및 증권사의 자사상품 비중(2011. 8월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은행<br>(예금) | 증권<br>(원리금보장형ELS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신탁계약 원리금보장상품 중<br>자사상품비중 | 99.8%      | 82.7%             |

- 이에 따라 운용상품의 90%이상이 자행예금 등 자사상품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.
- 또한 자사상품인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높은 이율 보장 등은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를 증대시켜 자칫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유도과 근로자의 운용선택권 확대, 그리고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자행예금 허용조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함.

별첨 : 『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체계 개선방안』 설명자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

## 『퇴직연금의 지배구조 체계 개선방안』 설명자료

### I. 서론

■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퇴직 연금제도가 정착하기 위해 주요 선진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를 종합 평가하고,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.

- 이를 위해 OECD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, 기금형 및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특징비교,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상의 제반문제 등을 검토함.

### II. 퇴직연금 지배구조 의의 및 체계

■ OECD의 연금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“연금펀드 소유자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이 약속대로 지급되도록 연금펀드를 운영하는 메카니즘이다”고 정의함.

- 퇴직연금에서는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주행동,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내부통제, 수급권보호 등 3분야에 대한 법령·규제, 임의규범과 시장 기능에 의해 규율하는 구조로 해석

■ 지배구조는 연금기금의 운용형태, 사용자와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의 역할관계 등 연금기금운용구조로서 계약형, 기금형, 회사형 등으로 분류됨.

-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(이하, 계약형)는 연금제도에 대한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적으로 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형태
  - － 금융회사가 연금제도에 관한 전 과정을 일괄하여 수탁하는 형태이므로 금융회사와 가입자인 근로자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.
-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(이하, 기금형)는 주로 미국, 영국 등 앵글로색슨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,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와는 별도로 독립법인 형태의 연금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구조

- 노사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기금에서 직접, 또는 전문적인 펀드매니저를 고용하여 기금을 운용하므로 계약형보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.

○ 회사형 퇴직연금 지배구조(이하, ‘회사형’)는 산업별로 별도의 연기금을 설립해 회사처럼 운용하는 구조

- 산업별로 연금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체역할을 하는 북유럽 일부 국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, 회사 도산시 퇴직연금의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음.

■ 퇴직연금 지배구조 가이드라인(2009)은 ① 퇴직자산관리, ② 수탁자책임 및 권한, ③ 감시모니터링, ④ 시장작동기능, ⑤ 가입자보호시스템 등 5가지 지배구조 요소별로 범주화하고 있음.

○ 보험 및 신탁계약 등을 통한 자산관리, 운용 및 관리기관간 역할 등과 관련된 퇴직자산 관리, 사용자(기금), 수탁기관(운용 및 자산관리기관),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과 관련된 수탁자 책임

- 감시자(연금계리사, 외부감사인)의 의무위반 행위감시와 관련된 감시모니터링, 보고·신고·공시·통지의무 등과 관련된 시장작동기능

- 사전적 수급권보호(리스크감독 등) 및 사후적 수급권보호(연금지급보장)와 관련된 가입자보호시스템

### III. 퇴직연금 지배구조 현황 및 제반문제

■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.

○ 운영구조: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

○ 서비스 구조: 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금사업자들이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번들형(Bundle형) 서비스로 제공

○ 계약구조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(특정금전신탁)에 의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

## ■ 우리나라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제반 문제점

- 가입자 참여 및 선택 측면: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회사의 주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으며 노사합의 과정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.
- 자사상품 허용 측면: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(예: 예금, ELS)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번들형 중심 운영 측면: 연금서비스의 제공방식이 사용자의 편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번들형 중심으로 퇴직연금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투자상품의 다양성 및 사업자의 견제기능 등은 미흡한 실정
- 수탁자 책임 측면: 최근 국내 일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계열 관계사와 체결하는 퇴직연금 계약은 금융위기 시 관계사가 연쇄도산 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.
- 감시기능 측면: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상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정책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제3자에 의한 상시적인 감시기능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.
- 시장기능 측면: 급부에 대한 정보, 상품 및 가격을 비교하기 위한 통합공시가 미진한 수준이며 적격조건, 사용자의 각출금 계산방식 등과 같은 기본공시 뿐만 아니라 수리 보고서 등과 같은 계리적 공시는 전무함.
- 수급권보호 측면: DB형제도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60% 이상을 적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100%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지만 그 이전까지 미 적립될 개연성이 높아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.

## IV. 주요국 퇴직연금 지배구조 운영형태

### 1. 주요국의 지배구조 형태

■ 미국은 기금형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국의 지배구조와 유사함.

- 다만 미국의 퇴직연금 운영구조는 영국과 같이 단순하지 않고 신탁의 설정여부, 운용자의 선임여부 등에 따라 4가지 다른 형태의 운용구조를 지니고 있으며, 지명수탁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.
- 일반적으로 지명수탁자는 연금자산의 운용을 제외한 모든 기능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거나 감독책임을 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함.
  - 지명수탁자의 지위는 신탁을 설정한 플랜인가에 따라, 신탁을 설정한 플랜의 경우 운용권

한을 신탁수탁자 또는 투자운용자에게 위임하느냐에 따라 상이

■ 영국은 1995년 Maxwell 사건 이후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신탁법을 개정하여 독립된 연기금을 신탁형태로 설치운용하는 기금형을 채택하고 있음.

- 기금형의 채택 배경은 연금제도의 운용에 근로자가 적극 참여하여 연금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로부터 연금자산 분리 등을 들 수 있음.
- 퇴직연금제도로 하여금 연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이나 운용자인 수탁자를 두도록 규정함.
- 영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수탁자를 선임하고,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연금자산을 사외로 유보하고 있으며 수탁자, 연금계리사, 외부감사인 등으로 하여금 연금사업자를 감시함.

■ 일본은 기금형과 규약형이 양립하며 지배구조에 따라 운영주체와 기여금 부담, 적립금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상이함.

- 일본은 영미식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하여 수탁자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연기금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형을 채택하되,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규약형을 병행하도록 함.
  - 즉,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제도의 선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기금형 및 규약형이 함께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음.
- 기금형의 경우 연금기금이 운영주체가 되어 사업주가 부담한 기여금을 적립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자산운용기관에 적립금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됨.
- 규약형의 경우 기금형에서 기금이 가진 권한과 책임의 대부분이 사업주가 역할을 수행하므로 사업주가 퇴직연금의 운영주체가 되어 사업주가 부담한 기여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관리와 운용을 자산관리기관이 수행함.

## 2. 종합평가

■ (패러다임적 평가) 단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, 즉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만을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지배구조체계상의 평가결과

<표 1> 퇴직연금 지배구조 패더라임적 평가

|        | 한국형<br>(계약형) | 영미형<br>(기금형) | 일본형<br>(기금형,계약형)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도 선택권 | 취약           | 보통           | 양호               |
| 가입자 참여 | 미흡           | 양호           | 보통               |
| 자본시장발전 | 낮음           | 높음           | 보통               |
| 공정시장경쟁 | 낮음           | 높음           | 높음               |
| 연금운영매체 | 미흡           | 발달           | 발달               |
| 기업비용부담 | 거의 없음        | 높은 수준        | 높은 수준            |
| 이해상충문제 | 보통           | 보통이상         | 보통이상             |

■ (파라메타적 평가) 현행 지배구조체계의 골격은 유지하되, 감시 및 시장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의 요소 평가결과

<표 2> 퇴직연금 지배구조 파라메타적 평가

| 구분            | 계약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ECD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퇴직자산<br>관리    | 신탁계약 이해상충(자행예금<br>허용) 및 통합운용으로 도덕적<br>해이 노출가능성 | - 신탁계약 기본<br>원리 충실<br>- 사후관리서비스 철저 | - 연기금에 대한 운용 과 감독<br>책임강화<br>- 신탁계약 기본원칙 준수 및<br>이사회역할 제고 |
| 수탁자책임<br>및 권한 | 사용자권한과 책임과의 불균<br>형, 사업자규제의 미흡                 | 수탁자 책임 및 권한 엄격                     | 수탁자별 책임 및 권한 명<br>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감시<br>모니터링    | 제3자적 감시기능미작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금계리사등의 역할강화                       | 연금계리사, 감사인 역할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장<br>작동기능    | 공시, 보고 등 감시 체계 미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 및 보고체계 정형화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 및 보고, 통지 의무 권<br>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가입자보호<br>시스템  | 실질적 수급권보호 장치 부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전적 및 사후적 가입자<br>보호시스템 구축          | - 리스크베이스감독<br>- 실질적인 가입자 보호시스<br>템 구축 독려                  |

## V.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

### 1. 기본방향

■ 현행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○ 즉 OECD에서 제시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운용체계에 기초하여 현행 지배구조상 문제점의 개선 필요

■ 단기적으로는 파라메타적 지배구조의 확립에 주력하되,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하여 가입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 2. 파라메타적 개선(부분적 개선)

■ 현재 은행에 대한 예외적인 자행예금 운용 허용조치로 인한 불공정경쟁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탁계약 원리에 기초한 계약구조 확립 필요

○ 특정금전신탁으로 한정된 법률의 취지, 수탁자의 충실의무 규정과의 상충문제를 법적·제도적으로 검토하여 자행예금의 편입비율 70%(2013년 4월이후 편입비율 50%)를 조속히 폐지(또는 일정유예기간 인정후 폐지)할 필요

■ 번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업자의 서비스 획일화와 서비스 질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언번들형 서비스 체계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함.

○ 이를 위해 퇴직연금 관련법에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적격기준(최소기준)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한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■ 선진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금운용자 등 수탁자 책임 강화가 필요함.

○ 이를 위해 수탁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자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규정이 별도 제정되어야 할 것임.

○ DB형에서 퇴직연금의 최종지급책임을 지는 사업자에 대해 충실의무 등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.

○ 법률상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입자의 수급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■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정보 비대칭성 완화가 필요함.

○ 보고의무 측면에서 감독당국은 수탁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계리적 가치평가, 각출금이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는지, 수리보고서 등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음.

- 공시의무 측면에서는 감독규정에서 종합적인 비교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급부에 관한 정보, 상품 및 가격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 체계적인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의 정비가 요구됨.

■ 근로자와 수탁자간의 이해상충문제 감소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철저한 감시기능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- 영미식 연금계리사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사업자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감시·보고토록 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- 연금계리사가 제3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일본을 참고하여 법률에서 연금계리에 대한 정의 및 연금계리사의 기능 및 업무 등을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연금계리사 및 공인회계사 선임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거나 정부차원에서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.

<표 3> 파라메타적 지배구조 개선(안)

| 구분    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(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 구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탁계약 기본 취지와 괴리</li> <li>· 자행예금의 편입비율 70% (신탁업 감독규정)</li> </ul>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탁원리에 기초한 계약체계</li> <li>· 자행예금의 예외적 운용금지 (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| 서비스체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번들형 서비스체계</li> <li>· 서비스가 부수업무로 전락</li> <li>· 사업자 퇴출 가시화</li> </ul>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언번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</li> <li>·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기준마련</li> <li>· 사업자간 상호견제기능제고</li> </ul>        |
| 수탁자책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탁자책임 규정의 비정형화</li> <li>- 사용자에게 대한 책임미흡</li> <li>- 제한적인 정부책임</li> </ul>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탁자책임과 권한 명확화</li> <li>- 사용자의 수탁자책임 강화</li> <li>- 정부책임의 범위 및 역할확대</li> </ul>         |
| 시장기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교공시기능의 미흡</li> <li>- 형식적인 보고 및 신고의무</li> <li>- 통지의무 부재</li> </ul>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기수익률 및 비교공시구체화</li> <li>- 보고 및 신고의무제 검토</li> <li>- 통지의무 명확화</li> </ul>              |
| 감시기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리사 등에 의한 감시미흡</li> <li>· 연금재정의 적정성검증 미흡</li> <li>- 연금회계 감시체계 부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리사에 의한 연금재정 검증</li> <li>- 제3자 감시자 선임 의무화</li> <li>- 독립적인 감시기구 도입검토</li> </ul>       |
| 수급권보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형식적인 수급권보호</li> <li>- 예금보험제도의 비현실성</li> <li>- 연금지급보장기구 부재</li> </ul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소적립금수준 상향조정 및 적기시정 조치 구체화</li> <li>- 예금보상한도 현실화</li> <li>- 연금지급보장제도 도입검토</li> </ul> |

■ 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최소적립기준 및 적기시정 조치 등과 같은 연금재정 건전성 강화장치와 예금자보호제도, 연금지급보증제도 등과 같은 연금지급 보증장치가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.

### 3. 패러 다임적 개선(전면적 개선)

■ 파라메타적 개선의 추진을 전제로 할 경우 가입자의 제도 선택권, 가입자 참여, 자본 시장 발전, 공정시장 경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선진 지배구조체계의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음.

<표 4>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(안)

| 구분         | 일본식<br>(1안)         | 미국/영국식<br>(2안/3안)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배구조 선택유형  | 혼합형<br>(계약형, 기금형)   | 단일형<br>(기금형)           |
| 지배구조 선택 기준 | 기금형<br>(근로자 300명이상) | 모두 기금형 선택<br>(근로자기준없음) |
| 지배구조인프라비용  | 낮음<br>(감시기능장치등)     | 높음                     |

■ 미국, 영국, 일본식의 3가지 지배구조 모델형태 중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안으로 우선적으로 일본식 지배구조 모델이 고려될 수 있음.

- 일본식 모델은 계약형, 기금형 중에서 하나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형 지배구조 형태를 채택하고 있어 영미식 모델보다 가입자의 제도선택폭이 상대적으로 큼.
  - 또한 영미식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함.
- 또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퇴직연금 운용 시스템을 지니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.

■ 완전 자율적 기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신탁형중심의 영국식 지배구조로 전환하기에는 이해상충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완충장치(보완장치) 준비에 시간적·제도적 비용이 요구됨.

-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식(1안), 미국식(2안), 영국식(3안) 순으로 지배구조의 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